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 주간’ 신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제대군인 주간’ 행사,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횟수,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의 인증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주간 신설(안 제2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제대군인 주간에 시행할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횟수 명시(안 제15조제1항)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3회로 정함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시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규정(제17조

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삭제

법률에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지원시 취업
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 관련 규정 신설(안제19조의2)

- 1)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의 인증기준을 정함
- 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 3)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해
정함
- 4)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시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교육지원시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제22조의2, 안제22조의3)

법률에 자녀의 교육지원을 원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시 취업지원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던 조항
이 삭제되고, 교육지원 관련 소득·재산조사 조항이 별도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권한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34조제1항)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제대군인 확인서 신청·발급 사무를
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2. 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
3.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행사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① 법 제14조제1항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3회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우수 고용 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

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대군인 고용 실적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자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 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게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5의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의2호 및 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7의2. 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3(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2. 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 3.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행사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등) ① <u>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u> 1.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등) ① <u>법 제14조제1항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3회로 한다.</u> <u><삭 제></u>

2.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녀가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 전에 35세를 초과하여도 취업지원대상자로 본다.

1. (생략)

2. (생략)

③ ~ ④ (생략)

제17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삭 제>

② -----
-----법 제14조제1항제2호-----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
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
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
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
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
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
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
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삭 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지원희망자(이하 “취업지원희망자”라 한다)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

<삭 제>

<삭 제>

<삭 제>

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 4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취업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대군인 고용 실적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자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신 설>

품의 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 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게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신 설>

<신 설>

<신 설>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 설>

<신 설>

<신 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5의2.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
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
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
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
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9조의
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희망자
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
원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6 ~ 7. (생략) <u><신설></u> 8 ~ 16. (생략) ② ~ ③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8 ~ 1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713